

경제 및 고용 동향

◆ 2015년 1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전월대비로는 1.7% 감소

○ 2015년 1월 생산은 공공행정, 도소매업, 건설업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0.7% 증가

－ 제조업 생산은 통신·방송장비(-9.0%), 기타운송장비(-5.2%), 영상·음향기기(-17.3%)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7.7%), 반도체(6.3%), 화학제품(4.0%) 등에서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함(전월대비로는 3.7%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3.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0.8%) 등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9.5%), 보건·사회복지(6.9%), 부동산·임대(5.6%)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4% 증가함(전월대비 0.4% 감소).

○ 2015년 1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3.1% 감소,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함.

－ 소매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0.0%)에서 증가하였으나 비내구재(-9.3%), 준내구재(-3.3%)에서 줄어 전년동월대비 3.1% 감소(전월대비 3.1% 증가)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3% 증가(전월대비 7.1%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실적이 줄어 전년동월대비 2.9%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전년동월대비 28.3% 증가

- 2015년 1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상승하였고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5%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0p 상승함.

◆ 2015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0.5% 상승(생활물가지수 0.7% 감소)

- 2015년 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35(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보합이고 전년 동월대비로는 0.5%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주류·담배(49.6%), 음식·숙박(1.6%), 교육(1.7%), 의류·신발(1.8%)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11.1%)과 통신(-0.1%) 등에서는 하락함.
 - 2015년 2월 생활물가지수는 107.19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함(전월대비로는 0.1% 감소)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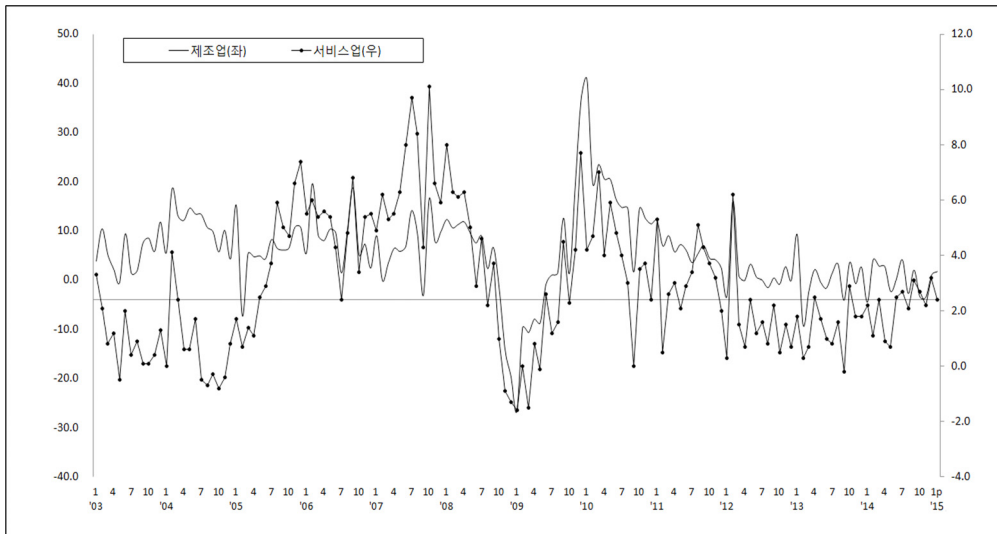
		2012					2013					2014p					2015p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p	1월	1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4	7.2	5.3	5.0	6.9	3.8	1.5	0.4	1.1	1.7	-1.7	-0.7	0.0	-2.0	0.0	-4.5	1.8(-3.7)
	제조업 생산	10.6	7.4	5.1	5.3	7.0	4.2	1.5	0.3	1.2	1.8	-1.8	-0.8	0.0	-2.2	-0.1	-4.7	1.7(-3.7)
	출하	11.9	7.2	4.9	3.5	6.7	3.3	1.5	0.4	-0.1	1.3	-2.3	-1.0	-0.2	-1.3	-0.2	-4.7	2.7(-3.3)
	내수	6.8	3.8	2.7	0.2	3.3	0.3	-1.3	-1.5	-1.9	-1.1	-2.8	-1.2	-0.4	-2.6	0.2	-3.9	1.9(-2.6)
	수출	18.1	11.6	7.7	7.2	10.8	6.7	4.9	2.3	1.8	3.9	-1.7	-0.6	0.1	0.3	-0.6	-5.5	3.5(-4.0)
	서비스업생산	2.8	3.3	4.5	2.7	3.3	2.5	1.7	1.6	1.3	1.7	0.8	1.7	0.7	2.7	2.2	2.2	2.4(-0.4)
소비	소비재 판매	5.4	5.7	4.7	1.9	4.3	2.0	1.0	1.7	2.5	1.8	0.2	1.1	0.7	1.9	1.6	5.5	-3.1(2.4)
투자	설비투자	5.4	4.8	-3.1	-4.7	0.7	9.4	-0.4	-7.1	-5.6	-1.1	-15.4	-10.0	-4.7	5.1	4.6	0.2	14.3(-7.1)
물가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1.1	1.6	1.4	1.0	1.3	1.0	0.5(0.0)

-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 3) 물가상승률은 2015년 2월 기준임.
- 4)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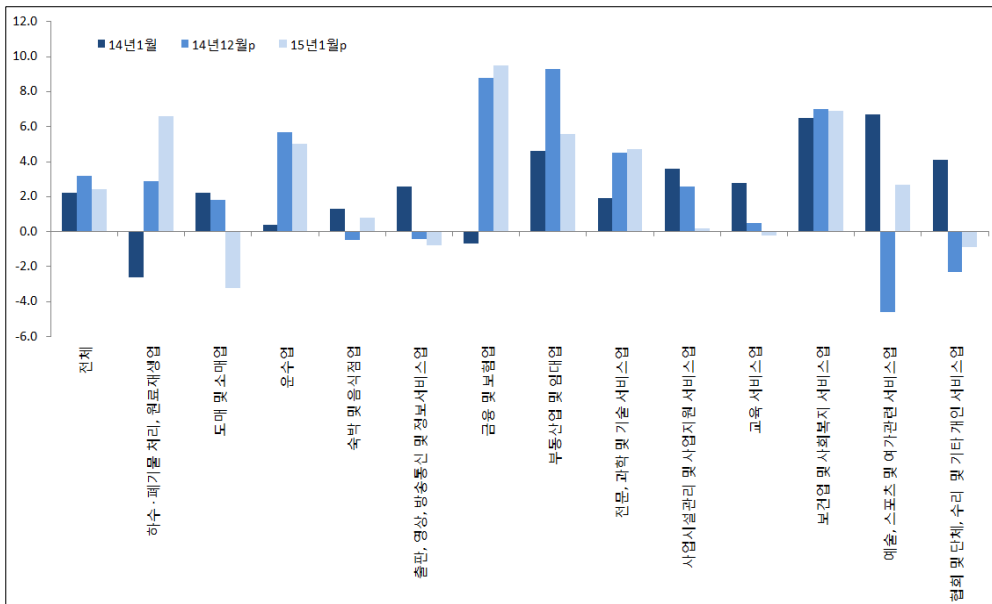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2014년 12월, 2015년 1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5. 3), 『2015년 1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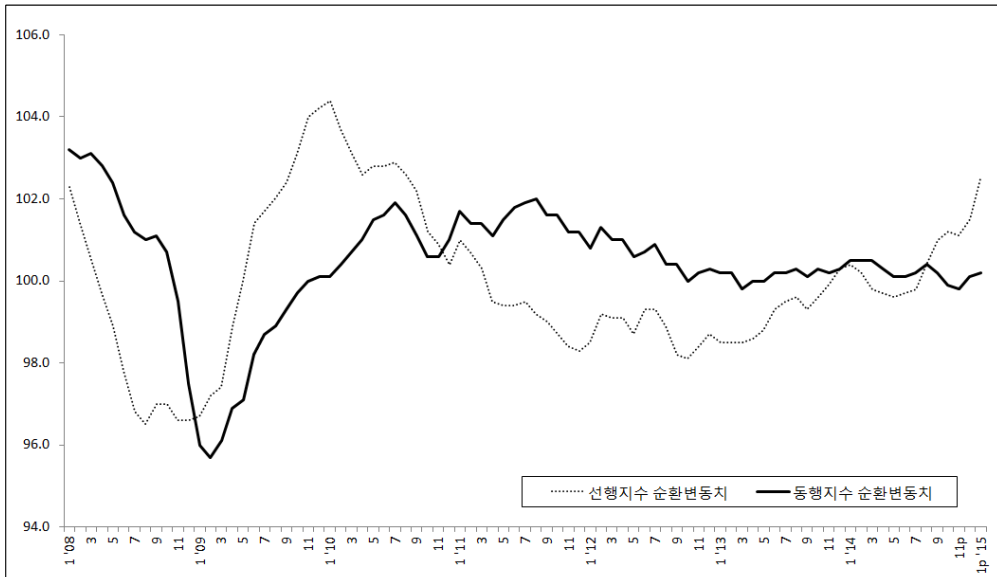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취업자 376천 명 증가**

- 2015년 2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3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1천 명(1.5%)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330천 명으로 159천 명(1.0%) 증가하였고, 여성은 11,068천 명으로 243천 명(2.2%) 증가하였음.
- 2015년 2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성(73.1%)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하였고, 여성(50.6%)은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함(그림 4 좌측 참조).
- 2015년 2월 중 고용률은 58.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2%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5년 2월 중 취업자는 25,1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6천 명(1.5%)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6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4천 명(1.0%) 증가하

였고, 여성 취업자는 10,53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2천 명(2.3%) 증가하였음 (그림 5 참조).

- 2015년 2월 중 실업자는 1,2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5천 명(2.1%)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4.6%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 남성 실업자는 6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천 명(2.2%)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5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1.8%)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4.4%로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하였고, 여성은 4.8%로 전년동월대비 변동 없음.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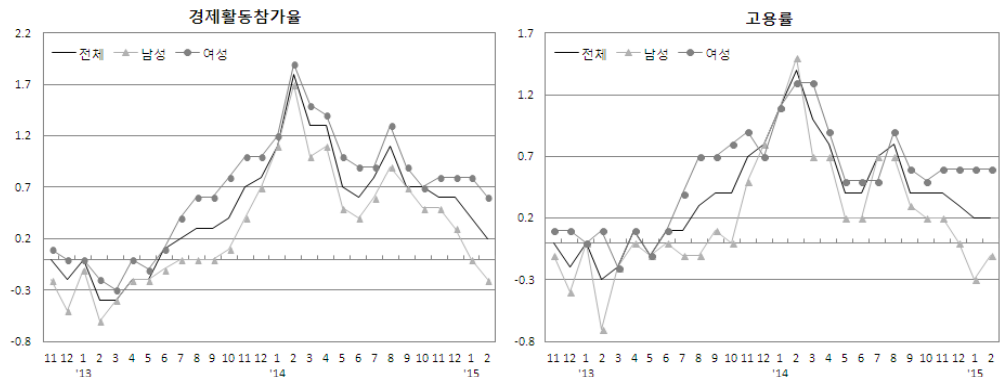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경제활동인구	26,078 (2.2)	25,945 (3.4)	25,997 (4.1)	26,767 (2.4)	26,810 (2.4)	26,622 (2.1)	26,094 (1.7)	26,398 (1.5)
참가율	61.7	61.3	61.4	63.1	63.0	62.4	61.0	61.6
취업자	25,346 (2.2)	24,913 (3.0)	24,819 (3.5)	25,790 (1.8)	25,927 (2.0)	25,767 (1.7)	25,106 (1.4)	25,195 (1.5)
고용률	60.0	58.8	58.6	60.8	60.9	60.4	58.7	58.8
실업자	733	1,031	1,178	977	884	854	988	1,203
실업률	2.8	4.0	4.5	3.7	3.3	3.2	3.8	4.6
비경제활동인구	16,167 (-0.6)	16,397 (-2.6)	16,346 (-3.6)	15,685 (-1.4)	15,760 (-1.4)	16,066 (-0.6)	16,681 (0.2)	16,429 (0.5)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5. 3), 『2015년 2월 고용동향』.

〈그림 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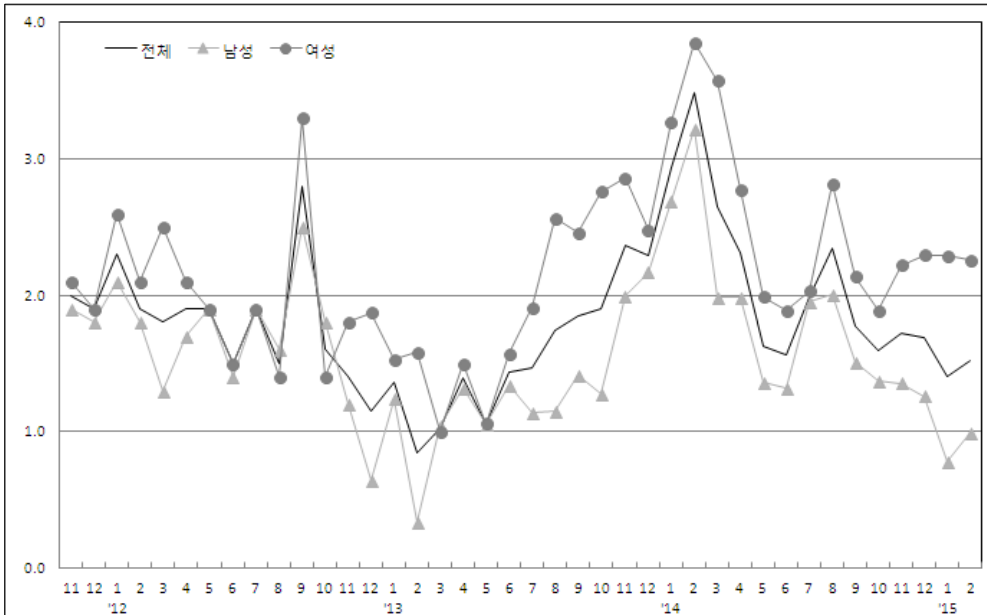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2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6,4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3천 명(0.5%) 증가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6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1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80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 명(-0.1%)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5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9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72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3천 명(9.0%) 증가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3,879천 명으로 142천 명(-3.5%) 감소함.

◆ 제조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5년 2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59천 명, 3.7%), 건설업(69천 명, 4.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142천 명, 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7천 명, 1.4%)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87천 명, -7.7%), 전기·운수·통신·금융업(-28천 명, -0.9%)에서는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1월	2월
전 산업	25,346 (2.2)	24,913 (3.0)	24,819 (3.5)	25,790 (1.8)	25,927 (2.0)	25,767 (1.7)	25,106 (1.4)	25,195 (1.5)	
농림어업	1,504 (-1.0)	1,179 (1.0)	1,123 (2.6)	1,631 (-3.2)	1,603 (-7.0)	1,395 (-7.2)	983 (-9.5)	1,036 (-7.7)	
제조업	4,245 (1.2)	4,279 (3.0)	4,274 (3.3)	4,319 (3.3)	4,346 (4.7)	4,374 (3.0)	4,421 (3.3)	4,433 (3.7)	
건설업	1,783 (-0.5)	1,683 (1.6)	1,663 (3.7)	1,813 (0.6)	1,833 (3.2)	1,854 (4.0)	1,758 (4.1)	1,732 (4.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751 (2.6)	5,837 (5.5)	5,867 (5.9)	5,798 (3.8)	5,930 (4.9)	5,992 (4.2)	6,020 (2.8)	6,009 (2.4)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994 (3.6)	8,865 (2.4)	8,816 (2.5)	9,147 (1.9)	9,176 (2.1)	9,128 (1.5)	8,900 (1.4)	8,943 (1.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54 (1.9)	3,055 (1.9)	3,061 (2.3)	3,067 (-0.5)	3,026 (-2.5)	3,015 (-1.3)	3,025 (-1.4)	3,033 (-0.9)	

주 :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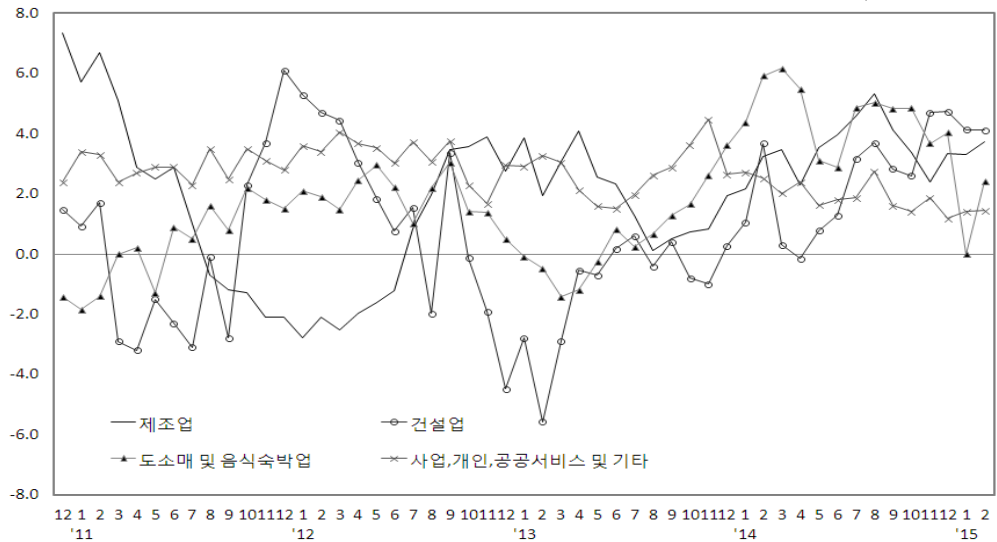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함.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5. 3), 『2015년 2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근로자 중심의 취업자 증가

- 2015년 2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는 18,76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5천 명(2.5%)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4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9천 명(-1.4%) 감소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353천 명으로 383천 명(3.2%) 증가하였고, 임시근로자는 4,887천 명으로 63천 명(1.3%), 일용근로자는 1,521천 명으로 20천 명(1.3%) 증가함.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도 소폭 증가함(그림 7 좌측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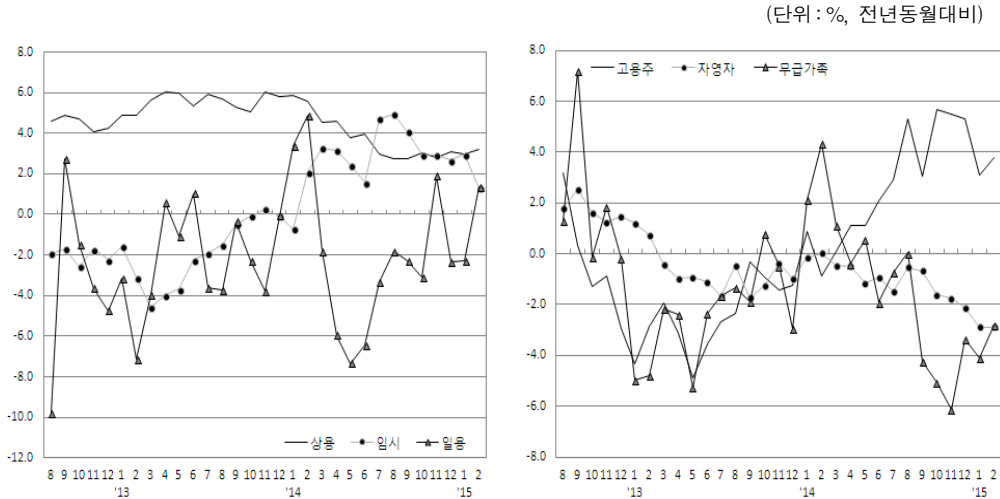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전 체	25,346 (2.2)	24,913 (3.0)	24,819 (3.5)	25,790 (1.8)	25,927 (2.0)	25,767 (1.7)	25,106 (1.4)	25,195 (1.5)
비임금근로자	6,854 (-0.9)	6,597 (0.3)	6,523 (0.5)	6,984 (-0.3)	7,047 (0.0)	6,799 (-0.8)	6,391 (-1.7)	6,434 (-1.4)
자영업주	5,618 (-0.9)	5,512 (-0.1)	5,464 (-0.2)	5,712 (-0.2)	5,760 (0.3)	5,625 (0.1)	5,392 (-1.2)	5,405 (-1.1)
무급가족종사자	1,236 (-0.8)	1,085 (2.5)	1,493 (-0.9)	1,272 (-0.6)	1,287 (-1.7)	1,175 (-4.9)	1,000 (-4.1)	1,029 (-2.8)
임금근로자	18,492 (3.4)	18,316 (4.0)	18,296 (4.6)	18,806 (2.6)	18,880 (2.8)	18,968 (2.6)	18,715 (2.5)	18,761 (2.5)
상용근로자	11,925 (5.6)	11,985 (5.3)	11,970 (5.6)	12,175 (4.1)	12,181 (2.8)	12,280 (3.0)	12,304 (2.9)	12,353 (3.2)
임시근로자	4,935 (0.0)	4,835 (1.5)	4,824 (2.1)	5,063 (2.4)	5,153 (4.6)	5,076 (2.9)	4,898 (3.0)	4,887 (1.3)
일용근로자	1,631 (-2.1)	1,496 (2.1)	1,501 (4.9)	1,567 (-6.6)	1,546 (-2.5)	1,612 (-1.2)	1,513 (-2.3)	1,521 (1.3)
36시간 미만	3,395 (5.5)	3,593 (-35.4)	3,667 (-63.2)	3,397 (-29.5)	5,229 (2.9)	3,659 (7.8)	3,775 (5.8)	3,677 (0.3)
36시간 이상	21,636 (1.7)	20,829 (15.1)	20,699 (54.3)	22,090 (9.3)	20,184 (1.9)	21,779 (0.7)	20,655 (0.7)	21,041 (1.7)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2015. 3), 『2015년 2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5년 2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67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 명(0.3%),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04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2천 명(1.7%) 증가함.

◆ 대졸 이상 실업률 소폭 하락

- 2015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자 및 실업률은 30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감소함.
 - 2015년 2월 중 연령계층별 실업률은 30~39세(3.3%, -0.3%p), 60세 이상(5.6%, -0.6%p)에서 하락하였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상승함.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5.0%, 0.0%p)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고, 고졸(4.8%, 0.3%p)에서 상승, 대졸 이상(4.2%, -0.1%p)에서 소폭 하락하였음.
- 2015년 2월 중 전체 실업자 1,203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10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1,099천 명으로 20천 명 증가하였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

	2013	2014					2015		
	4/4분기	1/4분기	2월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1월	2월				1월	2월
전 체	733 (2.8)	1,031 (4.0)	1,178 (4.5)	977 (3.7)	844 (3.3)	854 (3.2)	988 (3.8)	1,203 (4.6)	
15~29세	328 (7.9)	419 (9.8)	473 (10.9)	399 (9.4)	371 (8.6)	350 (8.3)	395 (9.2)	484 (11.1)	
30~39세	155 (2.6)	187 (3.2)	211 (3.6)	202 (3.4)	181 (3.0)	164 (2.8)	167 (2.9)	191 (3.3)	
40~49세	114 (1.7)	155 (2.3)	164 (2.4)	167 (2.4)	145 (2.1)	146 (2.1)	145 (2.2)	171 (2.5)	
50~59세	88 (1.5)	130 (2.2)	134 (2.3)	140 (2.3)	129 (2.1)	136 (2.2)	154 (2.6)	168 (2.8)	
60세 이상	48 (1.4)	140 (4.4)	196 (6.2)	69 (1.9)	58 (1.5)	58 (1.6)	127 (4.0)	187 (5.6)	
중졸 이하	84 (1.8)	173 (3.9)	217 (5.0)	108 (2.3)	95 (2.0)	96 (2.1)	154 (3.7)	209 (5.0)	
고졸	335 (3.3)	443 (4.3)	475 (4.5)	427 (4.1)	414 (3.9)	381 (3.6)	457 (4.3)	514 (4.8)	
대졸 이상	313 (2.8)	416 (3.7)	487 (4.3)	442 (3.8)	375 (3.3)	377 (3.3)	378 (3.3)	481 (4.2)	
취업무경험실업자	49	83	99	61	56	54	76	104	
취업유경험실업자	684	948	1,079	916	827	800	913	1,099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5. 3), 『2015년 2월 고용동향』.

(조문경, 동향분석팀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14년 12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2.8% 상승

○ 2014년 12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46천 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2.8% 상승함.

— 2014년 1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3,873천 원)은 초과급여(9.2%)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전년동월 대비 2.0% 상승에 그침.

- 상용근로자의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014년 들어 3% 초반에 정
체되어 있음(2014년 12월 3.4% 상승).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8% 상승한 1,422천 원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0=100.0)

		2011	2012	2013	2014	
					12월	12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44	2,995	3,111	3,547	3,190
		(1.0)	(5.3)	(3.9)	(2.1)	(2.5)
상용 근로 자	임금총액	3,019	3,178	3,299	3,799	3,378
		(-0.9)	(5.3)	(3.8)	(2.1)	(2.4)
	정액급여	2,341	2,470	2,578	2,699	2,660
		(4.8)	(5.5)	(4.4)	(3.7)	(3.2)
	초과급여	179	181	184	193	201
		(-8.4)	(1.0)	(1.7)	(4.6)	(9.3)
	특별급여	498	527	537	907	516
		(-19.3)	(5.8)	(1.8)	(-2.8)	(-3.7)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15	1,293	1,377	1,398	1,387
		(15.1)	(6.4)	(6.5)	(1.3)	(0.7)
소비자물가지수		104	106	108	107.9	109.0
		(4.0)	(2.2)	(1.2)	(1.1)	(1.3)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5	1.0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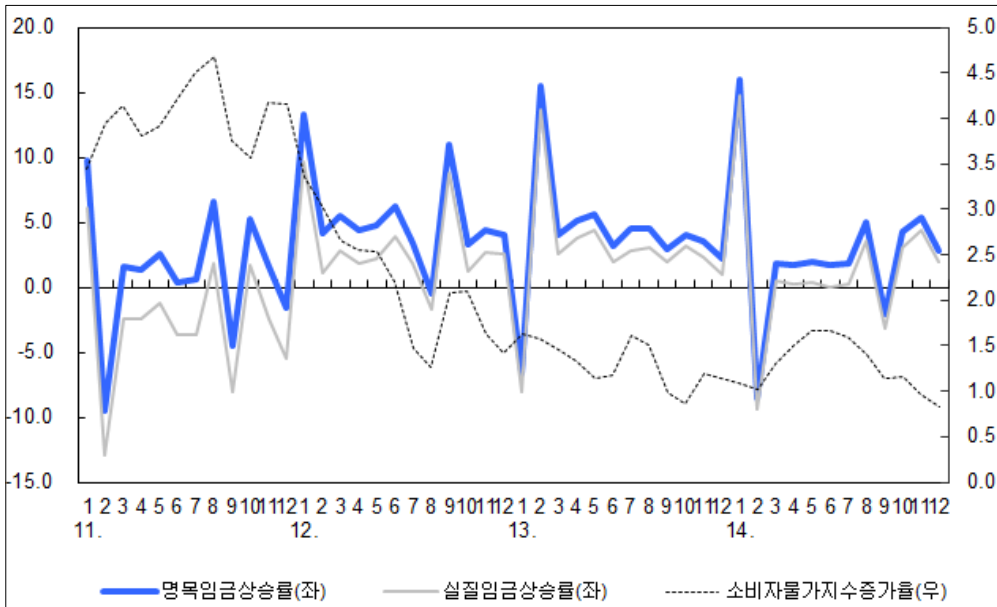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2014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90천 원
으로 전년(3,111천 원)대비 2.5% 상승에 그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3,378천 원)은 초과급여(9.3%)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정액
급여(3.2%)의 상승폭 둔화로 전년 대비 2.4% 상승에 그침.
 -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는 2012년 이후 추세임.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1,387천 원)은 전년대비 0.7% 상승에 그침. 이는 전년
대비 5.8%p 감소한 수치임.

- 2014년 12월 실질임금은 1.9% 상승함.
 - 2014년 12월 소비자물가지수(201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1.9% 상승함.
 -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3%로 전년 수준보다 소폭 상승한 가운데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폭이 커 실질임금 증가율은 1.3% 상승에 불과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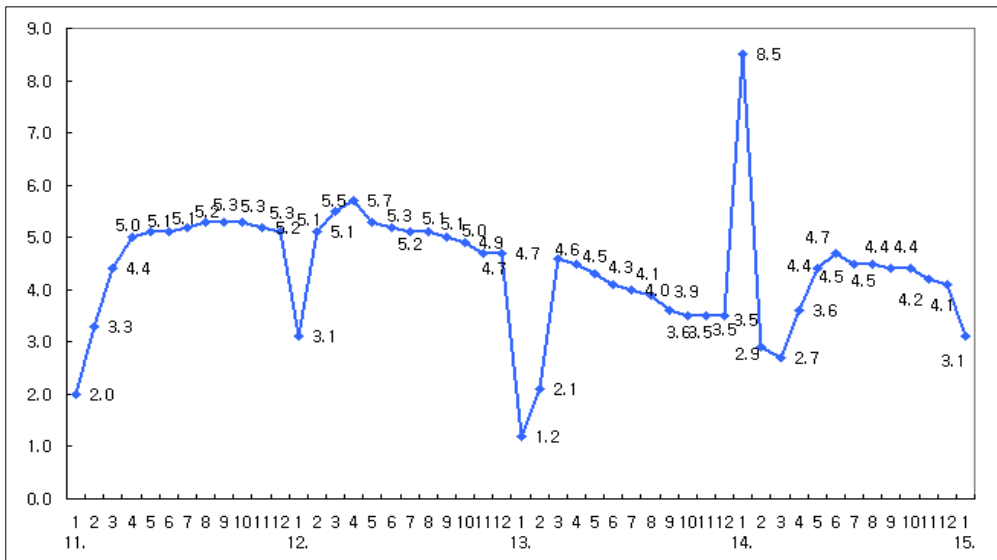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5년 1월 협약임금 인상률 3.1%

- 2015년 1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3.1%로 2014년 1월 인상률(8.5%)에 비해 5.4%p 감소함.
 - 2015년 1월 임금결정 진도율은 0.1%로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임.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주 :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12월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등 일부 산업 임금하락

- 2014년 12월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부문 임금하락폭이 큼(-15.2%). 이외에도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2.4%), 출판·영상 및 방송통신서비스업(-0.7%), 도매 및 소매업(-0.5%), 여가관련서비스업(-0.5%),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0.1%) 부문에서 임금이 하락함.
 - 반면 2014년 12월 임금상승이 두드러졌던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9.2%), 운수업(8.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0%) 부문임.
- 2014년 임금은 광업, 출판·영상 및 방송통신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둔화됨.
 - 2014년 임금이 하락한 산업은 광업(-2.1%)과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0.8%)으로 나타남.
 - 이외 모든 산업에서 전년 대비 임금이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둔화됨. 임금 상승이 두드러진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2%), 제조업(4.0%), 금융 및 보험업(3.5%), 교육서비스업(3.5%) 등으로 나타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2월	12월	
전 산업	2,995 (5.3)	3,111 (3.9)	3,547 (2.1)	3,190 (2.5)	3,646 (2.8)
광업	3,470 (4.9)	3,557 (2.5)	3,433 (6.2)	3,480 (-2.1)	3,530 (2.8)
제조업	3,221 (6.1)	3,371 (4.7)	4,025 (2.8)	3,506 (4.0)	4,188 (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2.9)	8,777 (3.0)	5,554 (0.2)	7,438 (-15.2)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6.7)	2,743 (3.3)	3,202 (0.7)	2,812 (2.5)	3,126 (-2.4)
건설업	2,273 (4.2)	2,414 (6.2)	2,543 (5.0)	2,497 (3.4)	2,652 (4.3)
도매 및 소매업	3,122 (6.1)	3,168 (1.5)	3,750 (-1.2)	3,206 (1.2)	3,730 (-0.5)
운수업	2,589 (8.2)	2,732 (5.5)	3,073 (5.3)	2,805 (2.7)	3,331 (8.4)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5.2)	1,772 (1.9)	1,894 (2.7)	1,785 (0.7)	1,895 (0.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4.3)	3,936 (2.2)	4,186 (0.6)	3,905 (-0.8)	4,158 (-0.7)
금융 및 보험업	4,988 (4.6)	5,058 (1.4)	5,678 (0.1)	5,234 (3.5)	6,200 (9.2)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8.8)	2,269 (3.4)	2,551 (2.3)	2,323 (2.3)	2,594 (1.7)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6.3)	4,243 (3.2)	5,285 (1.8)	4,419 (4.2)	5,281 (-0.1)
사업서비스업	1,789 (5.3)	1,883 (5.2)	2,009 (2.2)	1,924 (2.2)	2,101 (4.6)
교육서비스업	3,123 (4.6)	3,261 (4.4)	3,156 (1.8)	3,375 (3.5)	3,231 (2.4)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4.7)	2,662 (2.0)	2,782 (-0.7)	2,700 (1.4)	3,005 (8.0)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3.8)	2,326 (5.2)	2,793 (0.6)	2,398 (3.1)	2,781 (-0.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2.0)	2,226 (-0.1)	2,442 (-1.0)	2,249 (1.0)	2,537 (3.9)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12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2월 중소·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상승

- 2014년 12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대규모 사업체에서 모두 상승하였고, 대규모 사업체에서의 임금 상승폭이 큼.
 - 2014년 12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3,395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상승에 그침. 이는 초과급여(7.4%)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액급여의 상승폭 둔화에 기인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정액급여(7.0%)는 물론 초과급여 (19.9%), 특별급여(1.5%) 모두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대비 5.7% 상승함.
- 2014년 12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도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상승함.
 - 2014년 12월 기준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1,346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12.6%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1,430천 원)은 전년동월대비 0.9% 상승함으로써 상승폭이 둔화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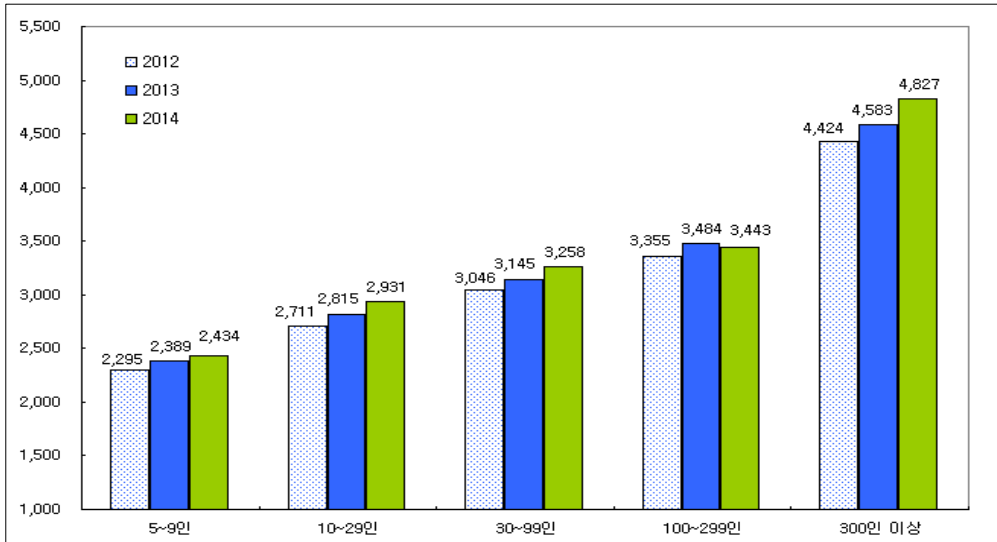
		2012	2013	12월	2014	12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178(5.3)	3,299(3.8)	3,799(2.1)	3,378(2.4)	3,873(2.0)
	정액급여	2,470(5.5)	2,578(4.4)	2,699(3.7)	2,660(3.2)	2,790(3.4)
	초과급여	181(1.0)	184(1.7)	193(4.6)	201(9.3)	211(9.2)
	특별급여	527(5.8)	537(1.8)	907(-2.8)	516(-3.7)	872(-3.8)
	비상용임금총액	1,293(6.4)	1,377(6.5)	1,398(1.3)	1,387(0.7)	1,422(1.8)
5~299인	상용임금총액	2,834(5.9)	2,938(3.7)	3,304(2.0)	3,008(2.4)	3,395(2.7)
	정액급여	2,333(5.9)	2,433(4.3)	2,534(3.8)	2,504(2.9)	2,617(3.3)
	초과급여	156(3.5)	160(3.0)	165(1.8)	172(7.5)	177(7.4)
	특별급여	345(7.7)	345(-0.3)	605(-4.8)	332(-3.6)	601(-0.7)
	비상용임금총액	1,301(7.0)	1,392(7.0)	1,418(2.1)	1,390(-0.1)	1,430(0.9)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424(3.5)	4,583(3.6)	5,569(2.2)	4,827(5.3)	5,886(5.7)
	정액급여	2,965(4.3)	3,093(4.3)	3,290(3.4)	3,272(5.8)	3,519(7.0)
	초과급여	275(-3.9)	270(-1.6)	293(10.7)	316(16.9)	351(19.9)
	특별급여	1,185(3.4)	1,220(3.0)	1,986(-0.8)	1,239(1.5)	2,015(1.5)
	비상용임금총액	1,209(0.1)	1,219(0.8)	1,196(-7.8)	1,354(11.1)	1,346(12.6)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3,008천 원으로 전년대비 2.4% 상승에 불과함. 이는 특별급여(-3.6%)의 하락과 정액급여의 상승폭 둔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임.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827천 원으로 전년대비 상승폭이 확대됨(5.3%). 이는 초과급여의 상승(16.9%)과 더불어 정액급여의 상승폭 확대에 기인함.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년대비 0.1% 하락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1.1% 상승함.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12월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가(21일 → 22일)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 2014년 12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2% 증가함.
 - 2014년 12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80.1시간)은 전년동월(174.6시간)에 비해 5.6시간 증가함(표 9 참조).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6.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도 120.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2% 증가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2월	12월	12월
전체근로시간	174.3 (-1.1)	172.6 (-1.0)	174.6 (4.9)	171.4 (-0.7)	180.1 (3.2)
상용총근로시간	179.9 (-1.2)	178.1 (-1.0)	181.0 (5.7)	177.1 (-0.6)	186.2(2.9)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 (-0.8)	165.6 (-1.0)	168.0 (6.1)	164.1 (-0.9)	173.4 (3.2)
상용초과근로시간	12.8 (-5.9)	12.5 (-2.3)	13.0 (1.6)	12.9 (3.2)	12.9 (-0.8)
비상용근로시간	122.3 (-0.2)	122.5 (0.2)	120.2 (-4.4)	117.0 (-4.5)	120.4 (0.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0.7% 감소함.
 - 2014년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4시간으로 전년(172.6시간)에 비해 1.2시간 감소함.
 - 2014년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0.6% 감소한 177.1시간을 기록함.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17.0시간을 기록함.

◆ 2014년 12월 근로시간은 숙박및음식점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14년 12월 근로시간은 숙박및음식점업(-0.1%)만 감소함.
 - 근로시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6%), 부동산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2월	12월	
전 산업	174.3(-1.1)	172.6(-1.0)	174.6(4.9)	171.4(-0.7)	180.1(3.2)
광업	185.3(-0.9)	180.6(-2.5)	185.2(4.8)	179.4(-0.7)	190.1(2.6)
제조업	186.4(-2.2)	185.0(-0.8)	189.4(5.9)	185.4(0.2)	194.5(2.7)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0.5(0.3)	170.5(-1.7)	177.4(4.0)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0.8)	182.0(-1.5)	182.8(2.9)	177.8(-2.3)	184.1(0.7)
건설업	152.5(-0.9)	152.7(0.1)	151.1(-0.6)	148.5(-2.8)	155.5(2.9)
도매 및 소매업	174.5(-0.3)	173.4(-0.6)	175.7(5.1)	172.3(-0.6)	181.6(3.4)
운수업	181.7(0.1)	177.8(-2.1)	180.5(3.8)	173.1(-2.6)	180.6(0.1)
숙박 및 음식점업	186.6(0.2)	177.3(-5.0)	183.4(0.7)	175.2(-1.2)	183.3(-0.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0.5)	165.5(9.5)	161.9(-0.7)	168.9(2.1)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5.8(9.9)	163.4(0.4)	172.2(3.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0.4)	191.5(-1.0)	191.9(3.6)	190.1(-0.7)	199.5(4.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5.6(8.5)	163.3(-0.4)	173.3(4.6)
사업서비스업	173.1(0.6)	172.3(-0.5)	174.0(6.2)	171.9(-0.2)	180.8(3.9)
교육서비스업	151.1(-1.2)	150.6(-0.3)	153.7(11.2)	152.0(0.9)	159.9(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0.7)	172.0(-1.6)	171.5(2.4)	169.6(-1.4)	178.2(3.9)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0.6)	158.0(-0.1)	159.8(3.8)	158.9(0.6)	165.4(3.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7.8(2.4)	162.9(-2.7)	169.8(1.2)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업 및 임대업(4.0%), 교육서비스업(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3.9%), 금융및보험업(3.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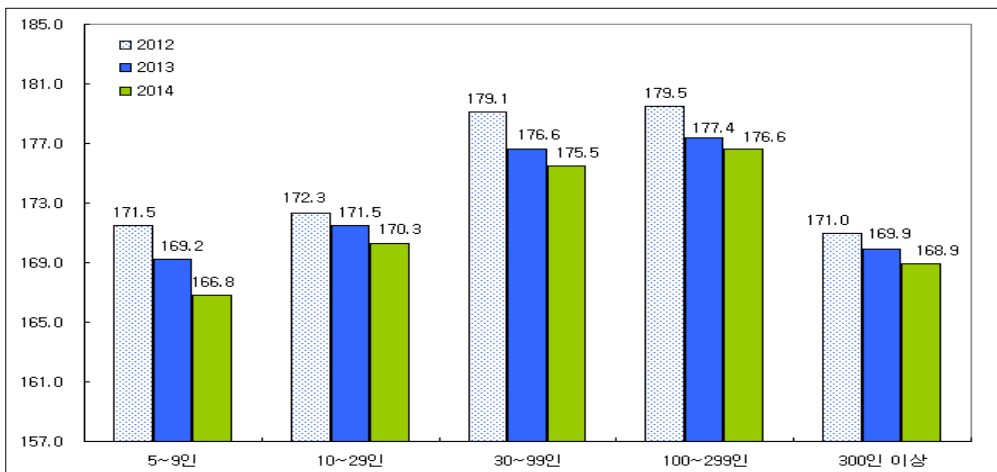
- 2014년 근로시간은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여가관련서비스업을 제외하고 모든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에는 교육서비스업(0.9%), 여가관련서비스업(0.6%), 금융 및 보험업(0.4%), 제조업(0.2%) 부문에서만 근로시간이 증가함.
 -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2.8%),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2.7%), 운수업(-2.6%) 등으로 나타남.

◆ 2014년 12월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증가

- 2014년 12월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에서 증가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5% 증가한 181.4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한 174.6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3%,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1.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4.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2%,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4.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3% 증가함.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편 2014년 1~12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함.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172.0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대비 0.6% 감소한 168.9시간을 기록함.
 - 세부 규모별로 보면, 5~9인 사업체의 2014년 근로시간은 166.8시간으로 전년대비 2.4%,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0.3시간으로 전년대비 1.2%,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5.5시간으로 전년대비 1.1%,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6.6시간으로 전년대비 0.8% 감소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가계수지 동향

◆ 2014년 연간 2인 이상 전국가구의 소득과 소비 증가

- 2014년 연간 전국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근로소득(3.9%), 사업소득(0.5%), 이전소득(4.2%)의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3.4% 증가하였으며, 물가상승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2.1%로 나타남.
 - 전국가구의 경상소득은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상승, 공적연금 등으로 인한 근로·사업·이전소득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년대비 3.2% 증가하였으며, 비경상소득도 8.6% 증가하였음.
 - 소비지출은 교통(8.6%), 오락·문화(5.6%), 가정용품·가사서비스(5.5%)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2.8% 증가(실질로는 1.5% 증가)하였고, 통신(-1.6%), 주거·수도·광열(-0.8%), 주류·담배(-0.6%), 의류·신발(-0.1%)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비소비지출의 경우, 공적비소비지출 중 사회보험(7.2%), 연금(5.4%), 경상조세(258%), 비경상조세(14.5%)가 증가하였으며, 사적비소비지출 중 비영리단체로 이전(2.5%), 가구간이전지출(0.9%)은 증가하였으나 이자비용(-5.2%)은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음.

– 2014년 연간 전국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49만 8천 원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하였음.

○ 2014년 4/4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소득은 전년동기대비 2.4% 증가하였으며(실질 1.4% 증가), 경상소득은 2.3%, 비경상소득은 8.1% 증가하였음. 소비지출은 통신, 교육, 보건, 의류·신발을 제외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5.5%), 기타상품·서비스(4.0%), 음식·숙박(3.3%), 오락·문화(2.9%) 등 전 비목에서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0.9% 증가하였으며, 실질로는 0.1% 감소하였음.

〈표 11〉 2인 이상 전국가구의 분기별 가계수지 동향

(단위: 천 원, %)

	2013				2014					
	4/4분기		연간		3/4분기		4/4분기		연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4,163.2	1.7	4,161.8	2.1	4,387.6	3.0	4,264.1	2.4	4,302.4	3.4
경상소득	4,041.0	1.7	4,024.7	2.3	4,245.1	3.0	4,132.0	2.3	4,153.5	3.2
근로소득	2,778.1	2.2	2,763.0	2.8	2,961.3	3.3	2,869.2	3.3	2,871.7	3.9
사업소득	876.8	0.4	857.5	0.4	866.4	1.2	846.8	-3.4	862.2	0.5
재산소득	20.2	-9.5	20.3	-3.0	19.1	6.7	21.5	6.5	19.7	-3.1
이전소득	365.9	2.1	383.9	3.5	398.4	4.9	394.4	7.8	400.0	4.2
비경상소득	122.2	3.1	137.1	-3.6	142.4	2.2	132.2	8.1	148.8	8.6
소비지출	2,483.6	3.0	2,480.7	0.9	2,576.3	3.3	2,506.1	0.9	2,551.1	2.8
비소비지출	759.4	3.8	780.9	2.8	837.6	3.7	761.4	0.3	804.5	3.0
처분가능소득	3,403.8	1.3	3,381.0	1.9	3,550.0	2.8	3,502.8	2.9	3,497.9	3.5
흑자액	920.1	-3.0	900.2	4.7	973.7	1.6	996.7	8.3	946.8	5.2
흑자율	27.0	-1.2p	26.6	0.7p	27.4	-0.3	28.5	1.4	27.1	0.4
평균소비성향	73.0	1.2p	73.4	-0.7p	72.6	0.3	71.5	-1.4	72.9	-0.4

주: 1) 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조세, 사회보험료 등의 공적지출과 타가구 송금 등의 사적지출이 포함됨)

2) 흑자액=가처분소득-소비지출

3) 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흑자율 및 평균소비성향의 증감률은 %p.

자료: 통계청(2015. 2), 『2014년 4/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2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89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2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119건)보다 30건 낮은 수치임.
- 지난 2월 조정성립률 60.3%
 - 지난 2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1.6%에 비해 1.3%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감소와 조정성립률의 상승을 통해 노사관계 불안정 요인들의 감소를 유추할 수 있음.

〈표 12〉 2014년, 2015년 2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5. 2	89	77	38	18	20	25	4	21	2	12	12	60.3
2014. 2	119	102	45	21	24	28	1	27	17	12	17	61.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지난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74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85건)보다 11건 낮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51.6%(32건), 기각·각하·취하비율이 48.4%(30건)를 차지함.

〈표 13〉 2014년, 2015년 2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5. 2	74	62	32	0	9	6	15	0	12
2014. 2	85	66	19	1	26	6	14	0	19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민주노총, 4월 총파업 총투표 돌입**

- 민주노총 산하 16개 산별연맹이 3월 21일부터 총파업 돌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나서고, 개표 결과는 4월 9~10일 중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힘.
 - 민주노총 위원장은 “4월 24일 총파업의 성패가 총투표 결과에 달려 있다”며 “전 조합원 투표와 압도적인 가결로 정부에게 노동자의 기세를 보여 주자”고 호소함.
 - 민주노총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사실상 쟁의태세를 구축하고, 총파업 집행력을 높이는 동시에 개별 사업장 파업 조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힘.
 - 이번 총파업은 정치파업과 조기 임금·단체협상 투쟁을 결합한 형태로 전개되며, 집회 중심의 하루 파업이 아니라 파업 일정과 규모를 점차 늘려 가는 파상파업으로 진행함.
 -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규정된 파업의 목적과 절차에서 벗어난 정치파업을 공식화함에 따라 불법파업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금속노조, 4월 총파업 결의**

- 민주노총이 예고한 4월 총파업 최대 동력인 금속노조가 △노동법 개악 저지와 개정 쟁취 △임금체계 개악 저지와 월급제 쟁취 △구조조정 저지와 투쟁사업장 승리를 3대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4월 1차 파업과 6·7월 2차 파업 돌입을 결의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노동관계법 개악안이 상정되거나 정부가 가이드라인·매뉴얼·지침을 공식 발표할 경우 총파업으로 저지한다”고 결의하면서, 4월 24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차원의 1차 총파업에 참여하고, 6~7월에는 임금·단체협상과 연동한 2차 총파업에 나섬.
 -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노동자 서민 살리기, 2015년 임단협 승리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하여 파업 투쟁계획을 논의하고, 3월 말에 진행되는 민주노총 전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에 동참함.
- 금속노조는 올해 금속산업 중앙교섭 요구안과 임금요구안·업종별 요구안도 확정함.
 - 올해 중앙교섭에서는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 원을 요구하며, 적용대상은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로 기간제·사내하청·파견·용역·이주노동자까지 포함함.
 - 중앙교섭 참여 사업장의 경우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고용 보장 △사내하청업체 변경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의 하도급 금지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함.

- 제조업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대책 요구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 의무 사항으로 명시돼 있는 위험성평가가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판단하에 노사 공동 위험성평가 실시를 요구하기로 함.
- 올해 임금인상 요구안으로는 기본급 15만9천9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인상안을 확정하고, 임금요구안은 지부 집단교섭과 지부 대각선교섭에서 다룸.
- 주요 업종별 요구안에서 노조 소속 완성차 지부와 부품사 지회는 △정기상여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 통상임금에 포함 △실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도록 근무형태·교대제 개선, 기본보전수당 신설 △충고용 보장 △정년연장을 주요하게 요구함.
- 조선업종분과위원회는 △조선소 중대재해 근절대책 마련 △중형조선소 활성화와 고용안정대책 마련 △조선소 해외매각과 해외이전 규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아울러 △고용안정과 충고용 보장 △위험성평가 실시를 사업장 공동요구안으로 마련함.

◆ **건설산업연맹, 안전한 사회와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기원제**

- 건설산업연맹은 2013년 3월 14일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숨진 6명의 건설노동자를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와 건설현장을 위한 안전기원제를 개최함.
 -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국가산업단지 노후설비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매설된 화학배관의 55.4%가 매립된 지 20년이 지났고, 30년 이상 가동하고 있는 설비가 17%에 달한다며 노후설비를 중대산업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 건설산업연맹은 “2년 전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6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지난해에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60년대에 조성된 노후산업단지에서 폭발물질이 생산되고 있어 화약고와 마찬가지로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주장함.
 - 플랜트건설노조의 한 관계자는 “최근 산업단지 사고는 산업설비 노후화가 급속도로 빨라져 작업자들이 언제 사고가 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노후설비를 조기에 교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노동자들이 취급하는 설비가 언제 설치됐고 얼마나 노후했는지를 알 수 있게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함.
- 이어서 연맹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산재사망 처벌 및 원청책임강화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함.

- 건설산업연맹은 “2년 전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폭발사고로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해도 책임지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건설현장 출입을 허용하고, 현장에 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함.
- 연맹은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수십 년간 요구했는데도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며 “건설노동자가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나라 만들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 당일에 건설현장을 일제히 멈출 것”이라고 예고하고, 4월 24일 민주노총 총파업에 참여해 정부에게 건설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힘.

◆ 양대 노총 제조공투본, 노동자 살리기 투쟁

- 양대 노총 소속 5개 제조산별(고무산업노련·금속노련·금속노조·화학노련·화학섬유연맹 등)로 구성된 제조공투본이 출범함.
 - 제조공투본은 섬유 가공에서 자동차 조립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요 제조업체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리로 이야기하는 ‘정규직 과보호론’은 이들 대공장 노조를 직접 겨냥하고 있음.
 - 이런 맥락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완화하거나,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종업원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어, 제조산별 조직들이 13년 만에 공동행보에 나선 것임.
- 제조공투본은 실질임금 저하 없는 노동시간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함.
 - 금속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저지하는 것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침체 국면인 경제위기 상황을 돌파하고 근본적으로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함.
 - 금속노련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며 목숨 걸고 일해 온 제조노동자들은 더 이상 정부와 자본에게 내어줄 것이 없다”며 “땀내에 찌든 작업복 속 동전 한 닢까지 내놓으라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제조부문 공동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함.
 - 제조공투본 소속 산별조직들은 이미 4-5월 총력투쟁과 6-7월 공동파업에 나서기로 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조직들은 4월 총파업 일정에 맞춰 파업 조직화에 주력하고 한국노총 소속 조직들은 임금·단체협상 조기 돌입을 통해 쟁의권을 확보할 방침임.

◆ **글로벌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 한국정부에 전교조 권리보장 촉구**

- 세계 100여 개 이상의 교육·시민단체가 연합해 만든 캠페인 포 에듀케이션(GCE)이 우리나라 정부에게 교사에 대한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함.
 - 전국교직원노조는 교육·시민단체인 GCE가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총회에서 우리나라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고 지난달 9일 밝힘.
 - 무상교육과 질 높은 공교육·아동의 교육권 신장 등 보편적 교육운동을 벌여 온 GCE가 개별 국가의 사건을 지목해 개선을 요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임.
 - GCE는 동의안에서 “국제 노동기준을 준수하며, 차별 없는 결사의 자유와 단체협상 권리를 보장하고 증진시키기를 촉구한다”며 “전교조에 부과된 일체의 징벌적 조치를 지체 없이 철회해 세계교육포럼 행사에 교원노조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강조함.
 -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도 최근 성명을 내고 GCE 동의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세계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 교사들의 권리를 지지하는 대열에 함께 섰다”며 “한국 정부가 전교조의 권리를 박탈한 조치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다”고 지적함.
 - 동의안 채택에 대해 전교조는 “해직자를 빌미로 전교조를 범외노조로 만들어 교사의 결사의 자유를 박탈하려 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GCE 총회 참석자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안다”며 “정부가 국제적인 우려를 야기하고 있는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함.

◆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요구**

- 민주노총은 지난달 12일 오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 277만 명을 포함해 최저임금 언저리의 저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노동자가 정부 통계상으로도 500만 명에 달한다”며 “최저임금 1만 원은 소득 주도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할 열쇠”라고 주장함.
 - 올해 법정 최저임금을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6만6천220원이고, 이는 2인가구 최저생계비(105만1천48원)를 겨우 넘고, 3인가구 최저생계비(135만9천688원)를 밑도는 액수임.
 -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식구가 입에 풀칠할 수준도 안 되는 지금의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죽어라 일하고도 또다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전국의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전면에서 세우고 4월 총파업에 임하겠다”고 밝힘.

- 민주노총은 이날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를 위한 5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최저임금 문제의 당사자인 청년·여성노동자들과 함께 6월께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임.
- 또한, 민주노총 산하 산별연맹들은 산업별 최저임금 요구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통일하고 업종별 교섭에 나선다고 밝힘.

◆ 메리츠화재, 전 직원 대상 희망퇴직

○ 메리츠화재 노사는 중장기 사업구조 체질 개선을 위한 희망퇴직을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월 26일부터 1주일간 희망퇴직 신청을 받음.

- 메리츠금융지주가 지난해 상반기에 실시한 경영컨설팅에서 인적구성이 적정 인원보다 400여 명이 많다는 진단이 나온 바 있어 희망퇴직 규모는 그 이상이 될 전망이다.
- 노사합의에 따르면 희망퇴직자에게는 직급과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최대 32개월분의 표준연봉과 최대 1천만 원의 자녀학자금, 300만 원 상당의 전직지원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임원들은 연봉의 20%를 삭감함.
-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매출이 5.8% 늘어 매출액이 5조2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당기순이익은 1천127억 원에 그쳤다"며 "사업구조 재편을 위해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하고, 임원 절대수를 축소하는 등 1차 효율화 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힘.
- 지난해 3월 취임한 남 전 사장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력을 줄이기보다는 직원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택하겠다”며 인력감축에 반대하고 노조와도 임금동결은 하되 구조조정은 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지난해 말 메리츠화재는 남 전 사장을 비롯해 15명을 일시에 해고함.
- 보험업계는 남 전 사장을 포함해 임원의 절반이 해임된 것과 관련해 “금융지주의 구조조정 압박을 거부한 데 따른 문책성 경질”이라고 분석하고 있음.

◆ 대법원, 코레일 승무원무 위탁 위장도급 관련해 판결

○ 2006년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된 뒤 계속된 복직 싸움에서 대법원은 코레일의 손을 들어줌.

- KTX 여승무원들은 2004년 코레일 자회사인 흥익회 계약직으로 채용된 후 위탁계약 주체가 철도유통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속사가 바뀌었음.
 - 그리고 2006년 KTX 승무업무를 또 다른 자회사인 코레일관광레저로 편입시키자, 또다시 소속사가 변경될 처지가 된 당시 여승무원들은 코레일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안을 거부하며 코레일에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함.
 - 이적을 거부한 280여 명이 해고되자, 단식·고공·천막 농성을 벌이며 정규직 전환과 복직을 요구하고, 2008년부터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함.
-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자회사에 KTX 승무업무를 위탁한 것은 위장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
-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KTX 여승무원의 업무가 구분돼 있었고 철도유통은 독립적으로 KTX 승객서비스업을 경영했다”며 “KTX 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감독하면서 업무에 투입하고 그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던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탁협약은 단지 도급계약의 형식만 갖춘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함.
 -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철도노조 서울본부 KTX승무지부장은 “정부기관인 코레일이 (2004년 최초 고용시)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는데 결국 거짓말로 끝나고 말았다”며 “안전과 관련한 업무는 절대 파견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함.
 - 철도노조 관계자는 “KTX 승무원은 코레일 소속 정규직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데도 위장도급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힘.
 -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2006년 해고되면서 시작된 KTX 여승무원들의 싸움은 9년 만에 일단락됐고, 이들의 복직은 사실상 어려운 전망이다. **KL**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